
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
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,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평가부담 완화 및 자율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0조 개정으로 완화된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을 지침에 반영해 일선 담당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함 (안 제9장제2호다목(3))

나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전 타당성 평가 시 도로사업과 도로가 아닌 사업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던 평가대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평가 효율성을 증진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(안 제11장제1호가목(2)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25일(월)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지역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정보>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○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

○ 전자우편 : jun0404@korea.kr

○ 팩스 : 044-201-5564